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 및 수리 용이성 등급제 도입 등 >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79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 및 제조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2
2. 수리 용이성 등급제 도입	7
※ 참고자료: 수리권 보장 관련 해외사례	10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5일 이정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Ⅲ. 검토의견

1.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 및 제조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수리할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가 수리할 권리를 가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3 및 제5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u>사용</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u>사용을</u>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u>사용 및 수리할 권리</u>) ----- ----- ----- <u>사용과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의 보장을</u> ----- ----- -----.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u>확보</u>	1. ----- <u>확보</u> <u>및 공급</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수리에 필요한 기술 정보 및 매뉴얼 제공
<신설>	4. 수리 가능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

현행	개정안
3. (생략) <신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 4. (생략) ②·③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0조의3(금지행위) 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는 수리를 위한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수리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 -----. 1.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사무용기기, 휴대폰 등의 제품에 대해 수동적으로 ‘수리받을 권리’를 넘어 소비자가 수리 방식 및 업체 등을 선택하여 ‘수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자가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 규정¹⁾을 두고 있음.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위한 현행 제도 주요내용]

구분		상세 내용
대상 제품		-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 - 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준수 사항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
	예비부품 배송기한*	-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
	제조 단계에서 수리용이성 제고	-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
	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다음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제공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나.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다.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 1)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정보 2)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제재 수단		- 두고 있지 않음

* 준수사항 중 법률에 규정된 부분(이 외 나머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실질적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리 기술은 제품의 제작 및 설계 기술과도 연관되므로 그 기술의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수리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²⁾.

따라서, 제조자 등의 저항을 줄이고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스스로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기술·장비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제20조의3에 따른 금지행위는 제20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금지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중복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20조의3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제20조를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한 뒤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법 체계상으로는 더 타당해 보이나,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영업비밀 유출 등의 우려 및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기반이 미숙한 상황에서의 제재 강화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저항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법 제20조는 제조자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규정이며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이 아님을 고려할 때, 권고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과태료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법적 의무”의 미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권고규정을 바로 의무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2)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운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조자의 준수 원칙을 강화하는 것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개정 대상 조문이 시행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 이행여건 성숙 후 제재수단 도입 등 순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수리에 필요한 기술정보(작동원리, 설계도, 부품목록) 공개 시 기업의 영업 비밀 및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기술경쟁력 약화 우려, 비전문가인 소비자의 직접 수리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수리 용이성 등급제 도입

개정안은 수리할 권리를 가지는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리권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고 관련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게 하는 등 수리 용이성 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3 및 제5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0조의2(수리 용이성 등급제) ① 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권 적용의 가능성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수리할 권리 관련 정보 제공의 수준 2. 수리 가능한 기능과 부품의 비율 3. 수리의 난이도 4. 부품 공급의 원활성 5.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부 특이사항 6.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등급분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등급분류를 받은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할 때 등급에 관한 정보를

현행	개정안
	<u>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u>

개정안은 수리에 용이한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하고,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수리할 권리는 2025년부터 시작된³⁾ 초기 단계로, 수리할 권리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① 업계와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 이행기반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② 동일한 제품 군에도 기술 수준이 상이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등급화 할 수 있는 기준과 기술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정부 국정과제⁴⁾ 추진을 위해 업체 이행현황 조사 및 소비자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리 용이성 등급제’는 수리권 관련 여건이 성숙된 후 이해관계자

3) 부 칙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3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4) 이재명정부 국정과제(42번) : 주요 제품군 수리권 이행실적 모니터링 및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26), 무상수리서비스 ‘찾아가는 수리버스’ 사업 운영(‘27) 등

의 숙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수리 용이성 등급제가 의무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기술적·비용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법적 의무제도의 실시
에 앞서 산업계 영향,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소비자의 미숙한 자체 수리가 오히려 제품을
손상시켜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제도의 취지인 지속가능한 사용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며,

등급제 도입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증가
하여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수리권 보장 관련 해외사례

① 유럽연합 (EU)

- 「EU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지침」 (‘24.7월 발효)
 - (대상) 가정용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 기기, 전자 디스플레이, 진공청소기, 스마트폰 및 태블릿, 용접장비 등

< 지침 주요내용 >

구분	내용
수리가능성 요건 의무화	법적 보증기간 내 합리적 비용으로 수리서비스 제공
법적 보증 연장	법적 보증기간 내 수리 시 법적 보증기간 연장(1년)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	각 회원국은 수리 촉진을 위한 조치를 최소 한가지 이상 시행
유럽 수리 정보 양식	수리업체 유럽 수리 정보양식을 통한 수리 정보 제공
온라인 수리 플랫폼	유럽연합 주도 수리 플랫폼 구축, 정보제공

- 「EU ESPR」 (‘24.7월 발효)
 - (대상) 가정용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 기기, 전자 디스플레이, 진공청소기, 용접장비 등
 - (주요내용) 제품 설계 시 수리용이성, 내구성 등 고려

② 프랑스

- 수리가능성 지수 (‘21.1월~)
 - (주요내용) 제품의 수리가능성을 평가(0~10점)하고, 제품에 표시
 - (대상) 스마트폰, 노트북, TV, 잔디깎이, 드럼세탁기, 일반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13개 제품

< 평가항목 >

평가항목	내용
정보 제공	수리 관련 기술 정보를 문서화하여 제공
분해용이성	제품 분해용이성, 필요한 도구 유형
예비부품 공급	예비부품 가용 기간 및 배송 시간
예비부품 가격	제품 가격 대비 예비부품 가격 비율
기타	제품 특성별 세부 기준